## 제 1 조 (목적 및 적용 범위)

본 약관은 전자서명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(이하 "전자서명관련법" 이라 한다)과 공인인증기관인한국전자인증주식회사(이하 "한국전자인증"이라 한다)가 제공하는 공인인증서비스(이하 "인증서비스"라한다)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 2 조 (정의)

-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1. 전자서명생성정보"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.
  - 2. "전자서명검증정보"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.
  - 3. "인증"이라 함은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.
  - 4. "인증서"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 15 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전자인증이 발급하는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.
  - 5. "등록기관"이라 함은 한국전자인증으로부터 인증서비스 가입신청서의 접수/처리 및 신원확인 등 가입자 등록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.
  - 6. "가입자"라 함은 한국전자인증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 받은 자를 말한다.
  - 7. "이용자"라 함은 한국전자인증이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하여 가입자의 전자서명정보와 전자서명검증정보의 합치성을 확인하려는 자를 말한다.
  - 8. "가입자 정보"라 함은 가입자에 대한 정보로서 성명/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가입자를 알아볼수 있는 부호/문자/음성/음향/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(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가입자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  - 9. "단말기 지정"이라 함은 단말기(PC, 스마트폰 등)의 기기정보(IP, MAC, HDD Serial 등)를 등록대행기관에 등록하고, 인증서 발급 시 가입신청자가 등록한 단말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.
  - 10. "추가인증"이라 함은 휴대폰 SMS 인증, 다채널 인증 등과 같이 단말기 지정 이외의 수단으로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.
  - 11. "다채널 인증"이라 함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경로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.

#### 제 3 조 (약관 명시 및 개정)

- ① 본 약관은 인증서비스 가입 신청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
- ② 한국전자인증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일자 2 주전에 이를 고지한다.
- ③ 가입자가 변경된 약관이 고지된 후 2주 이내에 서면 또는 전화, 전자메일의 수단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.
- ④ 본 약관의 공지는 한국전자인증 웹사이트(http://gca.crosscert.com)홈페이지상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며, 약관 변경의 고지는 전단과 동일한 방법 또는 전자메일의 수단을 통하여 할 수 있다.

#### 제 4 조 (약관 외의 규정)

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서명법령 및 한국전자인증의 인증업무 준칙의 규정에 따른다.

제 2 장 인증서의 신청 및 발급

제 5 조 (인증서비스의 종류 및 인증수수료)

① 한국전자인증에서 제공하는 인증서의 종류 및 용도는 아래[표 1]과, 각 인증서 별 수수료는 아래 [표 2]와 같다. 인증서 재발급 및 갱신발급, 효력회복 등의 인증서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, 한국전자인증의 홈페이지(http://gca.crosscert.com)을 통해 공지한다.

[표 1] 공인인증서의 종류, 용도, 유효기간

| 발급대상               | 공인인증서 종류 | 용도(이용범위)  | 유효기간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|-------|
| 법인 / 단체 /<br>개인사업자 | 범용       | - 일반 전자상거래 - 금융기관 업무 - 정부 전자 조달/민원업무 - 국세청 전자 세금계산서/ 민원업무 | 1 년이내 |
|                    | 용도제한용    | -전자세금계산서 업무<br>-은행, 보험 및 신용카드 업무<br>-기타 별도 계약에 따름         | 1 년이내 |
| 개인                 | 범용       | -일반 전자상거래<br>-금융기관 업무<br>-정부 민원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| 1 년이내 |
|                    | 용도제한용    | -은행, 보험 및 신용카드 업무<br>-정부 민원업무<br>-기타 별도 계약에 따름            | 1 년이내 |
| 서버                 | 범용       | -온라인상 서버를 통해 공인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<br>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
# [표 2] 공인인증서 수수료

| 발급대상        | 공인인증서 종류 | 수수료(원, VAT 포함) |         |  |
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|
| 로급대경        |          | 신규발급/갱신발급      | 재발급     |  |
| 버이/다비/케이나아  | 범용       | 110,000        | 5,500   |  |
| 법인/단체/개인사업자 | 용도제한용    | 별도 계약에 의함      | 없음      |  |
| 개인          | 범용       | 4,400          | 없음      |  |
| 개인          | 용도제한용    | 별도 계약에 의함      | 없음      |  |
| 서버          | 범용       | 1,100,000      | 110,000 |  |

② 제 5 조 1 항의 인증수수료는 인증서비스 가입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한국전자인증이 무료발급임을 명시한 경우 수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.

## 제 6 조 (공인인증서비스 가입신청)

- ① 인증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려는 자(이하 "가입신청자"라 한다)는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인증서비스 신청서(이하 "신청서"라 한다)와 신원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6조 1 항의 신청을 받은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될 경우, 가입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.
  - 1.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
  - 2.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
  - 3. 제출된 서류만으로 가입신청자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
  - 4. 기타 가입신청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기에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
  - 5. 단말기 지정 또는 추가인증 등에 실패한 경우
- ③ 등록대행기관은 법에 따라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한다. 다만, 등록대행기관은 안전성 제고를 위해 단말기 지정 또는 추가인증 등을 통해 가입신청자의 신원확인을 강화할 수 있다.

#### 제 7 조 (인증서의 발급절차)

- ① 가입신청과 신원확인이 끝난 가입신청자는 인증업무준칙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한국전자인증의 웹사이트에서 인증서 발급을 신청한다.
- ② 전항의 신청을 받은 한국전자인증은 인증업무준칙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다. 다만, 가입신청 후 전조제 2 항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하거나, 가입신청자가 인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할수 있다.
- ③ 가입신청자가 가입신청 후 인증서 발급가능기간 내에 인증서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서 발급가능기간의 초과와 동시에 인증서 서비스 가입신청이 취소된다.
- ④ 7조 3 항의 경우 한국전자인증과 등록기관은 가입신청자가 제출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 없이 파기한다.

#### 제 8 조 (인증수수료의 환불)

- ① 가입신청자가 인증서를 발급가능기간 내에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급가능기간만료일로부터 20일이내, 인증서를 발급 받았을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래 발급신청을 하였던 등록기관에 인증수수료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전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, 등록기관은 인증서 발급신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.

#### 제 3 장 인증서의 효력 등

## 제 9 조 (인증서의 유효기간)

① 한국전자인증이 발급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[표 1]의 유효 기간과 같다.

#### 제 10 조 (인증서의 효력의 소멸 등)

- ① 한국전자인증이 발급한 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효력이 소멸된다.
  - 1.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
  - 2. 전자서명법 제 1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자인증에 대한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
  - 3. 본 약관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
  - 4. 본 약관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

#### 제 11 조 (인증서의 효력정지 등)

- ① 한국전자인증은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,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한다.
- ②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는 효력이 정지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인증서 효력회복 신청이 있으면 그 효력을 회복한다.

③ 한국전자인증은 제 1 항,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효력을 회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Idap://dir.crosscert.com 에 이를 공지한다.

#### 제 12 조 (인증서의 폐지 등)

- ① 인증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인증서를 폐지한다.
  - 1.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
  - 2. 가입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
  - 3. 가입자의 사망/실종선고 또는 해산사실을 인지한 경우
  - 4.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/훼손 또는 도난/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
  - 5. 제 11 조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에 대한 효력회복신청이 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없는 경우
  - 6. 한국전자인증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유출된 경우
- ② 한국전자인증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ldap://dir.crosscert.com 에 이를 공지한다.

### 제 13 조 (인증서비스의 정지 등)

- ① 한국전자인증이 제공하는 인증서비스는 연중 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.
  - 1. 서비스용 설비 점검, 보수 또는 공사 등의 필요가 있어 부득이한 경우
  - 2. 국가비상사태,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
  - 3. 인증서비스와 관련한 보안상의 이유로 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
  - 4. 전자서명법령에 의한 인증서비스의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  - 5.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② 13 조 1 항에 따라 인증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경우 한국전자인증은 지체 없이 가입자에게 이를 고지한다.

# 제 14조 (한국전자인증의 의무)

- ① 한국전자인증은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,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는 경우에도 당해 가입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한국전자인증은 가입자의 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당해 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/관리한다.
- ③ 한국전자인증은 인증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당해 인증서의 기재사항 또는 인증서와 결부된 정보가 정확하고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
- ④ 한국전자인증은 인증업무준칙의 제/개정 내용 및 기타 인증업무 수행 관련 정보 등을 지체 없이 공지해야 한다.

### 제 15 조 (가입자의 의무)

- ① 가입자는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등을 이용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자신의 전자서명정보를 생성하여야 한다.
- ② 가입자는 인증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실명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하며, 인증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당해 인증서의 기재사항 또는 인증서와 결부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
- ③ 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관/관리하고, 이를 분실/훼손 또는 도난/유출되거나

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한국전자인증에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가입자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한국전자인증에 통보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.

#### 제 4 장 가입자 정보 보호

## 제 16 조 (가입자 개인정보보호)

- ① 한국전자인증은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정당한 수단에 의하여 "개인정보처리방침"에 따라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.
- ② 한국전자인증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다만, 한국전자인증은 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, 전자서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이 가입자의 개인정보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③ 회사는 인증서 부정발급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 공인인증기관과 해당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.
- ④ 한국전자인증은 가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- ⑤ 한국전자인증은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, 서비스 운영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, 필요한 경우 이러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전자인증이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,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,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"개인정보처리방침"에 공지합니다.
- ⑥ 가입자가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"개인정보처리방침"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, 가입자가 이러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인증서비스는 정지됩니다.

### 제 5 장 손해 배상

## 제 17 조 (손해배상)

① 한국전자인증이 인증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. 다만, 한국전자인증이 경과실에 의하여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, 한국전자인증이 가입한 보험의 배상한도 내에서만 배상할 수 있다.

# 제 18 조 (면책)

- ① 한국전자인증과 등록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- 1. 전쟁,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
  - 2. 한국전자인증 및 등록기관 외부의 통신기기 및 통신회선의 장애에 의한 업무처리의 지연이나 불능일 경우우
  - 3. 가입자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
  - 4. 기타 한국전자인증 및 등록기관의 과오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경우

#### 제 19 조 (재판권 및 준거법)

- ① 한국전자인증 인증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.
- ② 한국전자인증과 가입자 또는 이용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국내법을 적용한다.